##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9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박 정·송옥주·민병덕

안규백 · 임오경 · 강유정

어기구・소병훈・정준호

장경태 • 문금주 • 윤후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 기능 외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학원 등에 보낼 수밖에 없음.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격히 증가했고,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2천원에 달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한도

를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300만원"을 "400만원" 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 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③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	
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	<u>.</u>
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1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	
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	

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 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 라. (생 략) <u><신 설></u>

2.·3. (생략) ④ ~ ① (생략)

<u>400만원</u>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
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① (현행과 같음)